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권 조정

—— 최 인 철 (강원 경우회장.(株)에스원 강원/고문)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장기간 첨예하게 대치국면의 양상을 보

여왔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23개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에서 경찰은 신뢰도 영향력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강원도재향경우회원 2,500명중 1,5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시.군회장단도 지역에서 귀향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호소하르로서 선배로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몫을 토크히 해내고 있다.

언론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상정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권 조정에 부

임하고 있다.

수사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려면 독소조항인 검사만이 수사주체이고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명시해 놓아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창설이후 이순(耳順)이 되기까지 통지권자가 약속하고, 철재정치인이 때만되면 거론하고 전직 치안의 총수들이 용두사미식으로 화두를 꺼냈다가는 통지자나 정치권 눈치나 보다가 슬쩍 꼬리를 잡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번만은 절대 속지않겠다 고 꺼지지 않는 활화산이라 할힐 높게 더높게 불타오르는 것을 온 국민들이 필연적이라는 듯이 바라보고 있으며, 검찰도 속내는 들어내 보이지 않지만 드디어 울것이 왔구나 하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가리라 본다.

더욱이 전.현직이 동시다발적으로 60년만에 가장 큰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으며 사상 유래없이 현직 허준영 경찰청장이 15만경찰을 대표하여, 구홍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이 120만 재향경우를 대표하여 그 직을 걸고 선두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힘있는 정의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으로서 쌍수로 환영해야 하겠으며, 전.현직이 하나로 똘똘뭉쳐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경주하는 그날까지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연간 200만건 범죄중 97%를 실제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주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구시대적 폐습이라고 본다.

지금의 수사구조는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검사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로 전락하고 있는 기형적 수사구조 체계를 강건너 불보듯 간파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에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으며, 경찰은 검사 의존적 수사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고 또한 검사는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책임수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난립되고 그로 인한 수사기관간의 무분별한 경쟁과 충돌을 검사가 지휘 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검찰측 궤변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수사구조가 개선되었을때 경찰의 비장한 각오도 요구된다. 경찰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인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국민 중심의 봉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를 걱정한다

—— 가 한 (언론인)

최근 과거 안기부 시절 불법 도청 테이프를 놓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처음에는 도청 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에 시중의 관심이 집중되더니 점차 정치권의 책임전가-泥田鬪狗 양상으로 변모되면서 연일 정치권이 사활을 건 爭鬪를 벌이고 있다

과거 정권시절의 불법도청은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또한 비록 불법도청 자료이기는 하지만 도청 테이프에 포함되어 있다는 고위층들의 비리 내용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인 듯하다.

이번 불법도청 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에 광범한 국민들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지도층, 고위층의 비리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서 모든 국민들이 도감청을 걱정하는 사태로 발전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과 국민보호라는 역사적 소명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득실만을 따져 煽情

的·煽動的 여론 물이를 통해 순수한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도청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청과 범죄 적발·국익보호를 위한 감청은 일정수준에서 용인되어야만 한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에도 찬성할 수 없다. 그 후에 벌어질 사태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矯角殺牛의 교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 언론은 정보기관에서 도감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알고 있었다면 새삼스레 이번 사건을 놓고 정보기관에 대한 해체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중의 여론 물이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생각한 졸속 발상이 아닌가 되새겨볼 일이 다

미국이 “애설론”이라는 전세제적 감청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나와 9.11테러 이후에는 “애국법”을 제정하여 테러혐의자 등에 대하여는 무제한 감청을 하

용하고 있는 등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도감청에 대하여는 그 임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굳이 남북대치 상황 등 안보현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된 범죄 등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존재가치와 활동력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적 안보환경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정보기관을 탈정치화하고 능력을 키워주어 국권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제는 언론,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난 며칠간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여론물이에서 벗어나 조금은 냉정함을 갖고 이번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矯角殺牛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이다.

기행문



유상식 (前 경찰청 차장)

팅, 때로는 아이맥스 영상 속에 있는 착각을 한껏 나게 하는 전율의 극치였다. 발트르빙하는 뺨우(3,450m)에서 시작되고, 장장 80Km를 뻗치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 빙하위에 돌, 바위 등이 뒤섞여 널브러져 있는 퇴석 빙하였다. 4,000m 이상 산봉우리 수백개가 좌우로 늘어섰고 그 가운데로

말타고 빙하위로 K2봉 품속을 가다

폭이 좁히 6Km는 뿔뿔했다. 햇살에 녹은 물이 빙하위, 아래, 옆으로 방방없이 수심 갈래로 잘잘, 졸졸, 팔팔 흐르고 있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돌들이 짹짹 벌어진 크레파스에 튕기는 괴기함 소리는 간담을 서늘게 하였다. 어느 하나 없이 중심을 잃으면 밀리고,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인간 세상살이와 진배없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계곡, 산 전체 분위기는 생명이 메말라 버린, 삭막하고 으스스한 폐허였다. 산체는 하나 같이 홀랑당 벗고 끄는 나신상이었고, 5,000m가 되어야 겨우 꼭대기에 골깍모 같이 눈을 쬔다. 6,000m가 되면 산 중턱까지 눈을 덮고, 7,000m가 되어야 옆구리에 빙하를 차고, 8,000m가 되면 보란 듯이 온몸에 화눈을 위용있게 차려입고 전후좌우에 멋진 빙하를 좌대로 하여 야심찬 산꾼들의 관심을 모은다.

걸기가 시작되는 아스폴리(3,048m)까지 접근



박준관 (前 총경)

일제식민지 정책의 특징은 경찰서장과 검사는 절대 조선인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당시 쏘조선엔 검사는 61명이었으나 그 중 조선인은 6명이었다.

그 후 점점 식민지 정책이 심화되면서 1940년에 116명, 1945년 8월 15일 해방직전에는 145명이었으나, 조선인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인 1945년 12월에는 남한에만 검사가 92명이었다.

이들은 일제시대에 고등문관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발령을 받지 못하고 순사나 면서기로 유랑하던 사람과 해방직후 번시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 90%가 당시 입회서기였던 사람들을 숫자 충당을 위하여 간단한 특임시험을 거쳐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필경 배운 것은 일제식민지 검사의 잘못된 고압적 관행이다.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식민지 잔재로서 완전 불식되지 않고 경찰의 민주화에 일부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그 폐해의 몇 가지를 들고 싶다. 1980년초에 나는 당시 서울 시내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어느날 가톨릭대 강남병원에서 검사의 직계가족이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벌써 관할 검찰청 검사가 동료 검사의 연락을 받았는지 출장하고 있었다. (보통 번사 사건에 검사는 나오지 않고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관례였음)

그런데 그 일행은 관할 경찰의 현장 접근과 시체검시 등 일체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관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222조 3항 사법경찰 직무규칙 33, 34, 수사규범 등에 당연히 번시체를 검시하고 검시조서를 작성하

여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아서 할 터이니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당사자가 현직 검사의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예민성과 검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검시를 중지했다.

(원래 번사사건에서 행정검시는 경찰의 소관이고 사법검시는 검찰관할이었으나 사법검시로 통합검찰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불편이 많음)

그 후 본인은 곧 총경으로 승진하여 초임으로 총북진전 서장으로 부임했다. 어느날 검찰청에서 검사가 유치장 감찰을 온다고 연락이 왔다.

시골 경찰서에 별 급한 일도 없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청주에서 인천까지 소요시간은 자가용으로 약 1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니 밖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장님, 검사님이 정문 밖에서 서장님의 영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나는 전갈을 받고 순간 이조시대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영접(迎接)이라는 언어도단(言語道斷)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하며 야단을 쳤다. 마침내 분위기를 알았는지 나의 셋째 아들 또래인 30대의 초임 같이 보이는 젊은 검사가 서장실로 들어왔다. 감정이 종지는 않았으나 정중이 예우했다. 얼마나 경찰서장을 엽신 여겼으면 이러했겠느냐? 아마 그 사람은 시골 서장에게 단단히 우세를 부리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이것은 그 검사만 탓할 일이 아니다. 원죄가 누구냐는 것이다. 필경 산배검사가 시켰거나 듣고 배웠을 것이다.

뛰니뛰니 해도 특임검사들의 위세시대는 자유당 때와 군사혁명 초기였다. 형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에 2중 삽입할 수 있는 위력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사의 전체 ‘페이스(face)’는 아니다. 개중에는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검사들이 있었음도 알려두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떠한가? 범죄 없는 마

하는데 연 5일간 지쳐있는, 산행 첫날부터 발결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아열생활이 시작되고, 4일을 걸고서부터 식욕이 가졌다. 약간의 고산증에다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 산악 원정대의 짐을 나르는데 이용되는 말 신세를 졌다. 내노라하는 산꾼들이 등정을 탐내는 K2봉을 만나야 한다는 초심이 나에게 무모한 용기를 부추겨 주었다. 콩꼬르디아(4,650m)에 오르니 K2봉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빙하를 딛고 말 잔등에서 바라보는 K2봉은 과연 지상 절대 명산이었다. 몸구석 구석에 쌓인 무력감과 나른함이 일시에 사라지고, ‘나 여기 와서 그대 품에 안겼노라’하고 K2봉을 향해 환성했다. 중국과 국경을 하고, 인도와 영토 분쟁을 일삼는 카슈미르, 2,5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의 정수인 카라코람산맥의 절대군주 K2봉은 내가 선 자리에서 좌측으로 브로드 피크 산군과 가샤브롬 산군이, 우측으로 종타르 산군과 트란고 산군을, 맞은편으로는 발트르 산군과 마샤브롬 산군을 길게 거느리고 있었다. 말이 산군이이지 모두가 7-8,000m 산봉우리들로 뭉쳐져, 하늘을 가리는 병풍같이 둘러치고 있었다. 세월의 풍화가 빚

어 높은 지구 최대의 암봉 산경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고

함은 무한의 세월속에 태양, 물, 바람이 빚어낸 절묘한 조화가 아닌가 싶었다.

험거운 산발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웃고, 노래하고, 서로에게 몸을 기댄채 추운밤을 지새면서도 삶을 절망하지 않는 현지 산행 도우미들의 훈훈한 인정에 헤아릴수 없는 고마운 마음이 울컥 치밀었다. 언젠가는 온정의 흔적을 되돌리고 싶었다. 메고갔던 배낭과 옷가지들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즐거워 할 수가 없었다. 가난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인정을 주는 선심이있기에 나도 마냥 흐트했다.

산꾼도 아니면서 나이들어 무모함은 만용(蠻勇)이고, 부러워하거나 칭찬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래도 웅장하고 신비한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군에 안갈수 있었다는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 하산하면서 잿빛 K2산 강물에 아쉽고 안타까운 삶의 만가지 마음을 훌훌 싣어 버렸다.

일제의 식민지 잔재 깔린 형소법 개정 시급

- 허준영 청장의 용기있는 대처에 희망 걸어 -

을,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의 기지의 그늘에서 경찰은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의 업무소관인가, 범죄의 진압이란 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은 유사성이 있으나 예방이란 면에서는 대립적 개념이다.

경찰은 예방이 주업무로 진압과도 함수관계가 있는 반면에, 검사는 범죄를 범한 자를 국가를 대표하여 소추를 제기하는 것이 주업무로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하기가 우리 경찰도 과거에 역사 속의 지역인물을 발굴, 동상을 세우는 등 문화사업을 하다가 궤도에 오르자 교육청에 이관한 사실도 있다. 하루 속히 제 일과 남의 일의 구분이 명백해졌으면 좋겠다.

또 검찰은 전체 사건의 97%를 취급하는 경찰에 대하여 연필청 자질, 인권, 국민을 내세운다. 현재 우리 경찰은 50여년 전에 민주형소법으로 개정된 일본경찰(본인은 일본경대 출신임) 보다 조금도 자질이 낮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수사의 주재자가 경찰이며 검찰은 주로 공소권행사가 주임무이나, 필요시 수사도 할 수 있다. 지휘권도 있으나 우리와는 판이하다. 협조적·일반적 지휘권일 뿐이다.

그리고 인권 운운 하는 것은 굴뚝장이 남의 얼굴 닮히기다. 국민을 핑계대지만 국민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경찰이 더 많으며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역시 경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식민지 잔재가 깔린 비민주적 조항인 헌법 12조 3항(형소법과 중복), 형소법 195조, 196조, 201조 1항, 206조 2항, 198조 2항, 222조, 사법경찰 직무규칙 11조, 12조, 33조 검찰청법 4조 2항 53조, 54조는 조속히 개폐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15만 경찰은 말시, 경멸, 수모적인 예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시대적 변화이며 국민의 필연적 요망이다. 예측의 계속이나, 자주나의 기로에서 허준영 청장의 용기 있는 대처에 희망을 건다.

장학기금을 접수합니다

뜻있는 독지가의 장학금 출연을 환영합니다.

(기탁금액 제한 없음)

경우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조성 2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새로운 출발과 희망찬 전진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과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자본금을 확충하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립된 자본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2006년도 제29기 장학생을 위하여 독지가의 결정적인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에 의한 예우로서 5,000만원 기탁자는 1명, 1억원 기탁자는 3명의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혜를 드립니다. (경우회원 자녀, 현직경찰관 자녀 혹은 일반인 적격 학생도 가함.)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전 화 : (02)2232-9999
FAX : (02)2231-5065